

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9 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구미시의 관광진흥정책 수립과 관광자원 개발, 관광객 유치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의 목적 및 기능 규정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, 위원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 ~ 제7조)
- 다. 회의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8조 ~ 제11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
- 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장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구미시의 관광진흥정책 수립과 관광자원 개발, 관광객 유치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한다.

1. 관광진흥정책 수립
2.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방안
3.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방안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부회장 1명, 감사 2명,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의 협의회장, 부회장, 감사는 임원으로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며, 사무국장은 협의회장이 지명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관련 담당 국장으로 한다.

④ 협의회의 위원은 시의원, 관광관련업체, 대학, 공공기관, 기업체 등의 관광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

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4조(임기) 임원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임원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협의회장의 직무)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협의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위원이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
4.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

제7조(간사와 서기) ①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.

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

제8조(회의) ① 협의회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장이 소집한다.

1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
2. 그 밖에 시장 또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비밀보호) 협의회회의 위원은 업무수행 중에 얻은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0조(출석발언) 협의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광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(수당 등) 협의회회의 회의에 참석 또는 업무수행을 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「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구미시 관광자문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 요인

- 위 조례안 제11에서 협의회 회의에 참석 또는 업무수행을 하는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에 따른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(안 제11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함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협의회 위원 회의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소요는 예정되나 구체적인 재정의 추계는 어려움
- 협의회 위원 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 등의 비용이 연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.

4. 작성자 : 관광진흥과 관광정책계 김은정 (054-480-2652)

소관 실·과		관광진흥과
입 안 자	과 장	전 명 희
	담 당	김 창 주
	담 당 자	김 은 정 (480-2652)